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부적격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개요

-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192-1번지 외 21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20개동 총 1,0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6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1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타입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포함)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2018000000-01	84.9500	84A	84.9500	27.6715	112.6215	48.8079	161.429	60.004	247	14
	2018000000-02	84.9100	84B	84.9100	28.3613	113.2713	48.7849	162.056	59.976	366	22
	2018000000-03	101.9400	101A	101.9400	33.7557	135.6957	58.5695	194.265	72.005	36	2
	2018000000-04	101.8200	101B	101.8200	33.9353	135.7553	58.5006	194.256	71.920	192	11
	2018000000-05	116.9300	116A	116.9300	36.5733	153.5033	67.1820	220.685	82.593	89	6
	2018000000-06	116.9500	116B	116.9500	37.1284	154.0784	67.1935	221.272	82.607	71	1
	2018000000-07	132.9500	132TA	132.9500	41.5519	174.5019	76.3863	250.888	93.909	16	
	2018000000-08	132.9500	132TB	132.9500	41.5519	174.5019	76.3863	250.888	93.909	10	
	2018000000-09	135.4000	135T	135.4000	41.8926	177.2926	77.3053	255.086	95.639	20	
	2018000000-10	136.2900	136TA	136.2900	42.1181	178.4081	78.3053	256.713	96.268	10	
	2018000000-11	136.6800	136TB	136.6800	42.4969	179.1769	78.5293	257.706	96.543	18	
	2018000000-12	136.6800	136TC	136.6800	42.4969	179.1769	78.5293	257.706	96.543	8	
	2018000000-13	189.3500	189	189.3500	64.1804	253.5304	108.7908	362.321	133.746	2	
	2018000000-14	195.2900	195	195.2900	66.6953	261.9853	112.2036	374.189	137.942	3	
	2018000000-15	234.6500	234	234.6500	75.9768	310.6268	134.8179	445.445	165.744	1	
	2018000000-16	243.9500	243	243.9500	78.4029	322.3529	140.1612	462.514	172.313	2	
	2018000000-17	244.5600	244A	244.5600	80.3975	324.9575	140.5117	465.469	172.744	2	
	2018000000-18	244.7100	244B	244.7100	82.8355	327.5455	140.5978	468.143	172.850	1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84A	84B	101A	101B	116	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배정세대수	25	37	-	-	-	6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장소	청약접수 일시	당첨자 발표	계약일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건본주택	2018.05.02.(수) 10:00~14:00	2018.05.02.(수) 18:00 이후 (건본주택)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위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 개정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의 별표2)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예치금액			해당형 (타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4A, 84B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1A, 101B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16A, 116B, 132TA, 132TB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전평형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 추천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천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합니다.

■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합니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미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 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일반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6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등 기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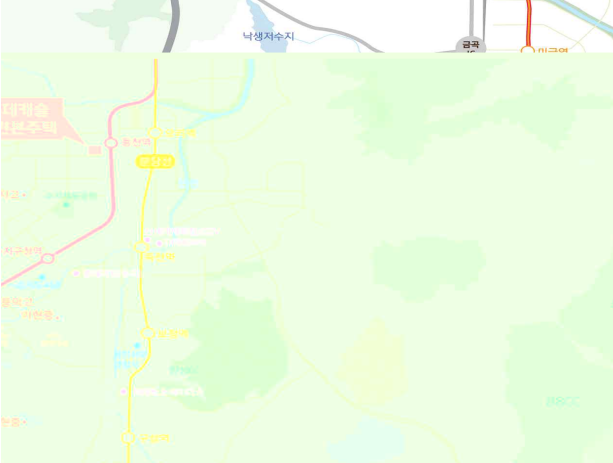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신청시 (공통 서류)	필수 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시 안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의 경우 재직증명서(복무사실확인서)
	추가 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 3자 대리인 신청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신청자) 인감(서명)날인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청약자	대리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위치도 및 견본주택

위치도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192-1번지 외 21필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901번지
	

기관추천(10년이상 복무군인 등)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배정세대		
		84A	84B	계
장애인	경기도청	8	12	20
	인천시청	1	1	2
	서울시청	3	5	8
	소 계	12	18	30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4	6	10
북한이탈주민		2	3	5
군인[장기복무]		3	4	7
중소기업근로자		4	6	10
합 계		25	37	62

※ 신청자격 요건 및 필요서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내 피추천자가 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자 전원에게 대하여 대상자 명단 작성을 부탁드립니다.